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4. 9. 24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구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 로 함(안 제16조제3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3항 중 “구” 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</p> <p>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16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재위탁-----.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시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위탁계약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hr/> <p>③ 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----- ----- -----</p>